

1980

통계조사지침

제 6 권

도·소매업 동태조사

2003/19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사항	3
3. 조사단위	3
4. 조사대상	3
5. 조사시기	6
6. 조사방법	6
7. 조사결과	6
II. 조사표 기입 요령	7
1. 조사표	7
2. 표본사업체 변동보고	11
III.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2
1. 조사표 제출	12
2. 조사표 내검	12
3. 유고사업체 정리	12
4. 기타사항(조사기록부)	12
5. 조사기록부 정리	13
부록 1. 신·구 산업분류 비교표(도매)	14
부록 2. 신·구 산업분류 비교표(소매)	15
부록 3. 신산업분류	16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소매업 사업체의 상품판매, 재고, 구입등의 동향을 파악하므로서 도·소매업의 업종별 동향 및 국민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경기예측등 제반 경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조사사항

업종, 주요취급상품, 월중판매액(월중의상판매액), 월말재고액, 월중재고액, 종업원수

3. 조사단위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체정의 참조)

4. 조사대상

서울지역의 도·소매업 사업체(150,000개) 중 표본으로 선정된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본 조사에서의 도매업 및 소매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도매업

- (1)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2) 공장, 광산등에 대하여 원재료 및 연료등을 판매하는 경우
 - (3) 호텔, 여관, 병원, 이발소, 미용원등 서비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4) 관공서, 학교, 회사,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용품 및 기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5) 토건업자, 운수업자 등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단, 개인경영의 농·임·수산업자에 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도매업이라 하지 않고 소매업으로 본다. 또한 다음에 기재하는 상품은 주로

산업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본다.

○ 업무용에 주로 사용하는 용품

예) 산업용 전기기기(가정용기기 제외)

(6) 총괄적 관리형태의 광공업회사(본사 또는 출장소)는 판매업무는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외되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점포, 직매점을 가지고 본사와 다른 장부에 의하여 매매업무를 행하는 경우

(7) 제조도매상중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후 이것을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8) 다음의 경우는 본 도매업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계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대리업, 중계업)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무역업)

나. 소매업

(1) 개인용, 가정용 소비를 위하여 일반소비자(개인 및 가계, 농가, 어가 포함)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소매와 관련상품의 수리를 겸하는 경우(단, 수리점인 경우는 제외)

(3) 주로 개인경영의 농·임·수산업자(법인 경영은 도매업임)에 대하여 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양복점, 양화점, 양장점, 가구점등은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거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분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에 분류한다.

(5) 빵, 과자점 등은 직접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주로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조사에서 제외하고,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자가생산의 제품 보다 타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비중이 클 경우

○. 스스로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하여 자기 명의로 소매할 경우

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1) 국가 및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

예; ●. 국제관광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체

단, 공사가 임대계약에 의해 사업체를 빌려준 경우 그 사업체는 조사한다.

○. 농협 및 수협의 공판장

단, 어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위탁판매장이나 동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구판장은 조사한다.

(2) 출입에 입장료 또는 허가등의 제한이 있는 장소에 설립되어 있거나 또는 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것.

예; ○. 역함내의 매점, 극장, 야구장, 군병영내의 매점, 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내의 후생시설 매점, 입장료를 받는 고궁내의 매점.

(3) 영업의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것. 또는 영업을 위한 고정적 설비가 없는것.

예; 노점, 입매, 행상등

(4) 외국정부나 주둔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5) 수리전업

단, 판매와 이에 부수되는 수리가공등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5. 조사시기

본 조사는 월별로 조사하여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이다.

조사기간(실사기간)은 조사대상월의 익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다.

6. 조사방법

조사대상업체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타제식 면접방법에 의한다.

7. 조사결과

매월 말일에 공표하며, 통계월보, U·N월보, 월간경제동향등에 게재함.

Ⅱ. 조사표 기입 요령

조사표는 도매용과 소매용 2가지가 있으며 기입요령은 도매와 소매
공히 동일하다.

도매사업체용 조사표; 청색

소매사업체용 조사표; 백색

1. 조사표

가. 난의사항

조사표 우측 상단 「년 월 일」에는 조사대상월을 기입한다. (조
사 당월은 조사대상월의 익월이 되므로 이를 주의할 것)

나. 조사구 번호 및 사업체 번호

도·소매 동태조사 사업체 명부상의 조사구 번호 및 사업체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예) 5719, 6014

다. 사업체명

등록된 정식명칭을 기입한다. 등록된 정식명칭이 없을시는 현재
사용하는 상호명을 기입한다.

라. 사업주 및 대표자명

단위 사업체의 실제 대표자나 사업주명을 기입한다. 법인인 경우
등록된 대표자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대표자 또는 경영주를 기입한다.
지점은 지점장명을 기입한다.

마. 사업체 소재지 및 전화번호

1) 사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번지 및 호수까지 상
세히 기입한다.

2)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항상 확인하여 기입한다.

바. 산업분류번호

별첨 산업분류표에서 조사품목의 해당 4자리수만 기입한다.

예) 1011, 1021, 2012, 2103

사. 유별분류

조사대상처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류명 및 상품명을 기입한다.

별첨 산업분류표에서 참조

예) 주곡(옥수수), 골재(석면)

아. 월중판매액

월중상품판매액은 해당조사대상월의 1개월간에 판매한 전상품의 판매액을 기입하며 이는 현금판매·의상판매·월부판매액의 총액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1) 상품의 대금전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인도와는 관계없이 판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2) 의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는 상품 인도시 판매된 것으로 보고 대금의 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3) 시용판매(고객이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면 매입하고 그렇지 못하면 반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판매)의 경우는 매입통지를 받았거나 대금을 입금했을 때(고객이 매수 의사를 표명할 때) 당월의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4) 상품권의 발행은 상품판매액에 계상하지 않지만 그 상품권으로 상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그 액만큼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5) 예약판매는 상품을 인도할 때 당해월의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6) 간접세는 상품판매액에 포함한다.

(7) 가공임, 수수료가 상품판매와 결부되었을 때는 해당 상품의 판매액에 포함한다.

(8) 사업체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했을 당시의 판매가격으로 판매액에 계상한다.

(9) 타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는 수탁자로 부터 대금을 받았다든가 판매가 끝났다고 통지를 받았을 때

자. 의상판매액

의상판매액은 의상판매(상품을 인도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일에 지불하도록 하는 판매)와 할부판매(일정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수회로 분할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대금을 받지 않은 총액을 말한다.

(주) ; 의상판매액은 월중판매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 월말재고액

조사대상기간 말일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상품의 금액을 말한다.

(주) ; 금액계상은 시가주의(조사대상 월말 현재의 매입가격)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상품재고액으로 기입한다.

- (1) 영업창고 또는 자가창고, 하차장 등 기타의 장소에 보관한 상품
- (2) 시용판매품은 고객이 매수 의사를 표명한 때 매매가 성립되므로 그때까지는 당기의 판매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 (3) 주문상품이나 예약판매는 상품인도 또는 대금을 입금하기전의 것을 포함한다.
- (4) 조사대상 기간중 수송 도중에 있는 미착품
- (5) 적송품(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타에 적송한 상품 즉 위탁품)은 수탁자로 부터 대금 및 판매완료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 (6) 시송품, 저장품, 부산품

카. 월중구입액

월중에 구입한 상품대금을 기입한다. 금액계상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타. 종업원수

종업원이라 함은 조사일 현재로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상용고용원을 말하며 그 인원을 종업원수란에 기입한다.

(1)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가) 자영업주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명의는 업주이나 실제로는 그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제외한다.

(나) 무급가족종사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사업체의 자영업주나 그의 배우자와의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용고용원

「상용고용원」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받고 고용된 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포함된다.

(가) 법인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역원

<예> ; 사장·이사·감사 등

(나)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다)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주) ; 임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라도 조사기준일 현재로 과거

2개월간 매월 20일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고용원으로 포함한다.

파. 비 고

(1) 판매액, 재고액등이 전월에 비하여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입할 것.

(2) 기타 해당사업체의 유고사유등을 기재할 것.

2. 표본사업체 변동보고

가. 실사중 해당사업체의 유고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상기한 양식에 기재하고 조사표에도 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유고사항 : (1) 휴업, 폐업, 주소불명, 전업했을 경우

(2) 사업체명, 사업체주소, 전화번호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Ⅲ.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조사표제출

본 조사의 내용은 매월 월간경제동향 보고자료에 게재되는 자료이므로 조사대상 익월 20일까지는 반드시 조사를 완료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표내검

조사된 조사표는 조사기록부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판매액 및 구입액의 증가감소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 조사표에 기재 제출한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증감사유기재시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할것 -

3. 유고사업체 정리

가. 폐업사업체

조사대상처가 폐업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업종으로서 규모가 비슷한 대체사업체를 선정조사보고하고 변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

나.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사업체

사업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응답을 하거나 허위응답등 조사키 어려운 경우는 지도원 및 사무소장과 협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의 폐업사업체 대체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4. 기타사항 (조사기록부)

(1) 조사기록부는 조사상의 모든 내용을 매월별로 기록하여 차기 조사시에 참고한다.

(2) 본 기록부는 조사원에 보관하며 당과에서 제출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입요령은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5. 조사기록부정리

가. 조사기록부는 조사상의 모든 내용을 매월별로 기록하여 차기 조사시에 참고한다.

나. 조사기록부는 조사원이 보관하며 당과에서 제출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입요령은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구항목 (세분류)

신항목 (세세분류)

농 산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 물 야채및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 물 과실및채소 	농 산물 및 음 식료품
축 수 산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 산 물 수 산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및고기 해 산 물 	
음 식 료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 료 품 식 료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 료 품 기타식료품 	
섬 유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타 섬 유 직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및연사 직 물 및 직물제품 	섬 유 및
신, 가 방 의복, 장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류 신, 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복 신발·가방 	의 류
의 약 품 및 화 장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약 품 화 장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약 품 화 장 품 	의 약 품 및 화 학 제 품
화 학 제 품		화 학 제 품	
금 속 비금속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광물재료 비금속광물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 속 	금 속
기 계 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기계기구 일반기계기구 수송용기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기 기 기 기 계 	전 기 기 기 기 계 도매업
가 구, 건 구, 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물 및 가정용기기 	철 물 및 가정용 기기
종 이 및 종 이 제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송 용 기 계 기 구 	
연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 류 석 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 이 및 서 적 가 구 기 타 	기 타 일 반 도매업
건 축 재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 축 재 료 	건 축 재 료

구항목 (세분류)

- 농 산 물
 - 곡 물
 - 야채 및 과실
- 축 수 산 물
 - 축 산 물
 - 수 산 물
- 음 식 료 품
 - 음 료 품
 - 식 료 품
- 신, 가 방 의복, 장 신 품
 - 의 류
 - 신, 가 방
- 직 물
 - 의 약 품 및 화 장 품
 - 의 약 품
 - 화 장 품
- 연 료
 - 연 탄
 - 유 류
- 기 계 기 구
 - 수송용 기계기구
 - 기타 가정용 기계기구
 -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 가 구, 건 구 집
 - 가 구
 - 철 물
 - 도자기 및 유리 집기
- 기 타 소 매 업
 - 운동구, 완구, 오락용품
 - 사진기, 시계, 안경
 - 건 축 재 료
 - 잡 화
 - 서적, 문방구

신항목 (세세분류)

- 곡 물
- 채소 및 과실
- 고 기
- 해 산 물
- 음 료 품
- 기타 식 료 품
- 의 복
- 모자, 신발, 방가
- 옷 감
- 의 약 품
- 화 장 품
- 가정용 연료
- 주 유 소
- 개인운수 장비 및 주유소
- 가정용 기기
- 가 구
- 철물, 전기 자재, 식기류
- 운동용구, 장난감
- 안경, 사진 및 광학용품
- 기타 일반소매
- 서적 및 문구용품
- 장신구 및 시계
- 종합소매업

신 산 업 분 류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	도 매	
10	농 산 물 및 음식료 품	
101	곡 물	
1011	주 곡	쌀, 보리, 밀, 옥수수, 조, 콩
1012	제 분	밀가루, 옥수수가루, 보리가루
102	가 축 및 고 기	
1021	가 축	소, 말, 돼지, 염소, 양,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1022	고 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
103	해 산 물	
1031	생 선	조기, 갈치, 고등어, 물오징어, 명태, 조개, 소라, 상어, 도미, 게
1032	건 어 물	건오징어, 건멸치, 북어, 다시마, 김, 미역, 파래,
104	과 실 및 채 소	
1041	과 실	사과, 배, 복숭아, 꺾, 감, 밤, 호두, 대추, 잣, 바나나
1042	채 소	무우, 배추, 시금치, 가지, 호박, 마늘, 오이, 고구마, 감자, 들깨, 참깨, 수박, 참외
105	음 료 품	
1051	알 쿨 성 음 료	맥주, 청주, 탁주, 약주, 소주, 고량주, 위스키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052	비알콜성음료	콜라, 사이다, 쥬스, 탄산수, 환타
106	기 타 식 료 품	
1061	과 자 류	캔디, 식빵, 고급빵, 비스켓, 껌, 떡
1062	장 류	매주, 된장, 고추장, 식초, 글루타민산소오다, 후추가루, 고추가루, 조미료
1063	기 타 식 품	백설탕, 각설탕, 분유, 참기름, 두부, 커피, 통조림, 달걀, 우유, 햄, 소세지, 버터, 이스트, 얼음
11	섬 유 및 의 류	
111	방 사 및 연 사	
1111	방 사	무명실, 명주실, 순면사, 혼방면사, 면봉사
1112	연 사	아크릴 SF, 나일론 F, 폴리에스터 F, 아마사, 견사, 화학섬유, 봉사
112	직 물 및 직 물 제 품	
1121	직 물	광목, 소창, 우양목, 포플린, 면부지, 골멘, 면, 혼방직물, 소모직물, 방모직물, 나일론직물, 견직물, 혼방화설 직물
1122	직 물 제 품	커넨, 담요, 카이펏트, 융단, 수건, 스틸카바, 이불, 요, 베게, 직물백
113	의 복	
1131	의 복	남녀 회의 몇 내의, 양말, 스타킹, 장갑, 타올, 와이셔츠, 여자용 브라우스, 손수건, 브래지어, 넥타이, 의복용 악세사리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14	신 발 · 가 방	
1141	신 발	고무신, 운동화, 케미슈즈, 구두, 장화 등 각종 재료의 신발
1142	가 방	책가방, 핸드백, 트렁크 등 각종 재료의 가방
12	전 기 기 기	
1211	가 정 용 기 기	냉장고, 룸쿨러, TV, 세탁기, 라디오, 전기 난로, 선풍기, 전기다리미, 전기곤로, 전축, 녹음기, 믹서, 전기열판
1212	산 업 용 전 기 기 기	전기모터, 모터스타터, 제어기, 전기발전기, 전화, 전기측정기, 엘리베이터, 전동기, 용접기, 정류기, 냉방기, 배전변압기, 소켓
1213	기 타 전 기 기 기	보청기, 전자관, 트랜지스터, 전기 및 전자 부품장비
13	의 약 품 및 화 학 제 품	
131	의 약 품	
1311	양 약	각종 양약
1312	한 약	각종 한약
132	화 장 품	
1321	화 장 품	분, 향수, 샴푸, 남성화장품, 로션, 메니큐어, 립스틱, 크림, 파운데이션, 화장수, 치약
1322	비 누 세 정 제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 하이타이, 우지, 경성합성제, 공업용, 분말비누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33	화 학 제 품	
1331	비 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카리비료, 혼합화학 및 복합비료
1332	농 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
1333	페 인 트	유성 및 수성페인트, 비닐쉬, 락카, 형광도료, 안료
1334	잉 크 류	인쇄용 잉크
1335	화 공 약 품	접착제, 성냥, 다이아나이트, 초안폭약, 가소제, 뇌관, 산소, 염소, 염산, 유황, 황산, 암모니아, 카바이트, 가성소다, 유기·무기화공약품
1336	합 성 수 지	PVC, 합성수지제품
14	기 계	
1441	농 기 계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탈곡기, 잔디깎기, 낙농장비, 무화기,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원용기계
1412	전 설 장 비	불도저, 포클린, 그레이더, 스크래저, 쇼벨, 콘크리트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인양기, 기중기, 산업용트럭, 콤프레샤, 착암기
1413	금속, 공작, 목공기계	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 압연기, 성형기
1414	일 반 기 계	증기터빈, 수력터빈, 개스컴프, 공기압축기, 송풍기, 환풍기, 롤러베어링, 발브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415	전문및 과학기계	안경, 틀, 렌즈, 측량기, 항해기구, 광학기구, X선기구
1416	사무용기계	타이프라이터, 전기계산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금전등록기
1417	기 타 기 계	프라스틱, 돌, 유리, 고무, 도기등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15	철물및가정용기기	
1511	철 물	날붙이, 접시류, 주방용도구, 요리집기, 연판, 위생비품, 볼트, 나트, 와셔, 건물, 철물, 요리화로 및 오븐, 버너, 방열기, 재봉틀, 펜치, 드라이버, 톱등
1512	연관및 난방장치	보일러, 연소기, 난방기구, 연판, 방열기, 탕비기
1513	주 방 용 품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알미늄도기, 유리, 토기등의 식기
1514	기 타	바깥스, 물통, 요리집기, 요리화덕, 수공구, 비, 솔, 철레
16	건 축 재 료	
1611	목 재	원목, 각재, 판재, 분할재, 육송, 라왕, 재생, 목재, 미송, 합판
1612	시 멘 트	생석회, 소석회, 시멘트, 백색시멘트, 레미콘
1613	벽 돌	적벽돌, 기와, 부력, 시멘트벽돌
1614	풀 재	쇄석, 자갈, 모래, 활석, 성원석, 석면, 화강암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615	유 리	판유리, 변기, 애자
1616	기 타	대리석, 인조석, 루핑지, 방수액, 타일, 토판, 플라스틱판, 석면스레트
17	금 속	
1711	철 근	철광석, 선철, 망강철, 규소철, 강괴, 주강, 고철, 봉강, 철강, 철근, 가시철선
1712	철 관	일반배관강관, 압력배관, 주철배수관
1713	금 속 판 재	후판, 냉연박판, 스텐레스강판, 아연도철판
1714	기 타	핫코일, 흑철선, 못, 동광석, 연광석, 활광석, 금·은, 알미늄괴, 연괴, 동판, 나동선, 에나멜동선
18	기 타 일반 도매 업	
181	수 송 용 기 계 기 구	
1811	자 동 차	승용차, 버스, 트럭, 소형화물차, 덤프트럭, 삼륜차
1812	자 전 거 및 모 터 사 이 클	자전거,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부품타이어, 튜우브
1813	자 동 차 부 품 및 타 이 어	기어, 피스톤링, 핸들, 브레이크
182	종 이 및 서 적	
1821	종 이	신문지, 판지, 종이백, 단보루상자, 노트, 화장지, 벽지, 박엽지, 살포지
1822	서 적	신문, 잡지, 팸플릿, 서적
183	가 구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1831	가 구	목재책상, 옷장, 철제의자, 철제캐비닛, 철제책상, 침대, 각종 철제 가구
184	기 타 도 매	
1841	석 유 제 품	석유, 등유, 경유, 휘발유, 방카C유, 기타유류
1842	석 탄	조개탄, 분탄, 연탄
1843	시계, 보석및장신구	시계, 보석, 장신구, 보조장신구, 및 우산, 양산
1844	운동구및경기용품	트랙장비, 체조 및 훈련장비, 경기장용품, 공, 라켓, 배트, 낚시도구, 바둑, 장기관
1845	폐 품	금속찌꺼기 및 폐품, 냅파, 폐휴지, 폐 고무 등 재생가능품
1846	축 음 기 관	녹음테이프, 레코드판
1847	기 타	로푸, 와이어등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소 매	
20	음 식 료 품	
201	곡 물	
2011	곡 물 류	쌀, 보리, 밀, 옥수수, 조, 콩
202	고 기	
2021	고 기 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
203	해 산 물	
2031	생 선	조기, 갈치, 고등어, 물오징어, 명태, 조개, 소라, 상어, 도미, 게
2032	전 어 물	전오징어, 전멸치, 북어, 다시마, 미역, 김
204	채 소 및 과 실	
2041	채 소	무우, 배추, 시금치, 가지, 호박, 마늘, 오이, 고구마, 감자, 들깨, 참깨, 수박, 참외
2042	과 실	사과, 배, 복숭아, 꿀, 감, 포도, 밤, 호두, 대추, 잣, 바나나
205	음 료 품	
2051	음 료 품	맥주, 청주, 탁주, 소주, 위스키, 콜라, 사이다, 쥬스
206	기 타 식 료 품	
2061	과 자 류	캔디, 식빵, 빵, 건과자, 설탕과자, 껌
2062	장 류	매주, 된장, 고추장, 식초, 고추가루
2063	기 타	밀가루, 식용유, 설탕, 조미료, 분유, 참기름, 두부, 커피, 통조림, 달걀, 우유, 햄, 소세지,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버터, 국수, 이스트, 얼음
21	섬유및의복·신발	
211	의 복	
2111	의 복	메리아스내의, 외의, 작업복, 잠옷, 와이셔츠, 코트, 브라우스, 숙녀기성복
2112	기 타	실, 단추, 이불등
212	모자·신발·가방	
2121	모 자	운동모자, 밀짚모자, 등산모, 중절모, 정모
2122	신 발	고무신, 운동화, 장화, 구두, 케미슈즈
2123	가 방	책가방, 핸드백, 가방, 트렁크
213	옷 감	
2131	옷 감 류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옷감(피륙)
22	가구및가정용품	
221	가 구	
2211	가 구 류	책상, 걸상, 옷장, 캐비닛, 침대, 응접세트등 각종사무용 및 가정용가구
222	가 정 용 기 기	
2221	음 향 기 기	TV수상기, 라디오, 녹음기, 전축
2222	가 전 제 품	냉장고, 선풍기, 믹서, 세탁기, 룸쿨러
2223	재 봉 틀	재봉틀
2224	기 타	레코드판, 악기, 풍로, 열판, 토스터
23	약 및 화장품	
231	의 약 품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2311	양 약	양약, 살충제 및 살균제
2312	한 약	한 약
232	화 장 품	
2321	화 장 품 류	분, 향수, 샴푸, 남성화장품, 로션, 약용비누, 메니큐어, 릿스틱, 크림, 파운데이션, 화장수 치약
24	장 신 구 및 시 계	
2411	장 신 구	백금, 금, 은, 귀석, 준귀석
2412	시 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탁장시계, 패총시계
25	서 적 및 문 구 용 품	
2511	서 적	참고서, 교과서, 정기간행물, 잡지, 서적
2512	문 구 용 품	노트, 렉지, 일기장, 커텐지, 연하장, 연필, 만년필, 볼펜, 인주, 크레온, 잉크, 붓, 주판 지우개, 시험지, 풀, 철핀, 색종이
26	개 인 운 수 장 비 및 주 유 소	
261	개 인 운 수 장 비	
2611	장 비	승용차, 모터싸이클, 스쿠우터, 자전거
2612	자 동 차 및 자 전 거 부 품	타이어, 베어링, 브레이크 등 자동차 및 자전거 부품, 고무호수(공업용)
262	주 유 소	
2621	주 유 소 유 류	휘발유, 중유, 경유, 방카C유, LPG, 등유, 석유, 모빌유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27	가 정 용 연 료	
2711	연 탄	구공탄, 알탄, 조개탄, 분탄
2712	석 유	석유, 등유, 경유, 휘발유
2713	개 스	프로판가스, 부탄
2714	기 타	장작, 숯, 알콜, 카바이트
28	기 타 일 반 소 매	
281	철물전기기자식기류	
2811	철 물	못, 나트, 볼트, 와셔, 크립, 삽, 팽이, 호미, 해머, 끌, 대패, 스크류, 드라이버, 전지가위, 양철가위, 벤치
2812	전 기 기 재	옥내배선, 전구, 프러구, 스위치, 퓨즈, 조명기구
2813	식 기 류	도기, 자기, 유리, 스텐레스스틸, 양은, 접시, 주발,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바케스, 칼, 도마
282	안경사진및광학용품	
2821	안 경	안경, 돋보기, 선글라스, 수중안경
2822	사진, 광학용품	사진, 필름, 사진화학물, 사진촬영기, 영사기, 사진기, 쌍안경, 현미경
283	운 동 용 구 · 장 난 감	
2831	운 동 용 구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비, 골프장비, 코트펠드계입장비, 테이블게임장비, 수렵용장비, 수중경기용장비

분류번호	분 류 명	품 목 명
2832	장 난 감	장난감, 인형, 완구
284	기 타 소 매	
2841	건 설 재 료	합판, 시멘트, 골재, 기타 건설재료
2842	비누위생연관비품	세탁비누, 세정제, 화장비누, 치약, 구두약, 치솔, 위생 및 연관비품
2843	페 인 트	안료, 염료, 페인트 및 관련 화학제품
2844	골 동 품 기 타	도자기, 서예품, 병풍, 액자, 동전, 고목
2845	기 타	우산, 양산, 토산품, 액자, 거울, 보청기, 각종 기계장비 소매업, 생화
29	종 합 소 매 업	
2911	종 합 소 매 업	(백화점통계)